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‘2024년 5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5월 31일’로 연장하고자 함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훈령 제1751호

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개정훈령안

공항수용능력 설정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2024년 5월 31일”을 “2027년 5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5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15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5월 31일</u>----- ---</p>